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새마을연대의 법적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사용·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 제2조의 새마을운동조직 정의에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u>새마을문고중앙회</u> ,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새마을문고중앙회, 청년새마을연대,</u> ----- ----- ----- -----.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및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과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¹⁾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사용·수익과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²⁾ 특정 조직이 법 제2조의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재정지원과 공공재산 이용 등 실질적인 법적 효과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최근 청년세대를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조직을 확대해 왔음.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전국 213개 시·군·구에서 청년새마을연대가 출범하였으며, 16개 시·도별로 청년새마을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전국 단위 청년조직의 외연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3) 세계일보,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 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2023.06.19.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9514108>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에서 실제로 청년조직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청년조직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청년층 유입 기반을 법률로 뒷받침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와 조직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조는 이미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어, 동 규정을 전제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임.

이에 비추어볼 때, 청년조직을 법문에 명시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행 포괄규정의 해석과 조직 정비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이 제시한 “청년새마을연대”를 정의조항에 열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제2조에 열거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 중앙회는 모두 중앙단위 조직인 반면, 청년새마을연대는 회칙상 시·군·구 단위 조직에 해당함.

반면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각 지역 청년새마을연대를 포괄하는

중앙단위 연합조직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행 제2조가 중앙단위 조직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조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년새마을연대”보다는 중앙단위 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를 포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직 위상과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법률에 명시될 만큼 조직으로서의 체계와 안정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현재 전국 4,600여 명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기존 중앙 산하조직은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수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규모 비교 》

조직명	회원 수(명)	비고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4,667	2023.6.17. 창립, 청년조직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83,852	중앙단위 산하조직
새마을부녀회	1,013,384	중앙단위 산하조직
직장·공장새마을운동	39,823	중앙단위 산하조직
새마을문고	555,953	중앙단위 산하조직

이에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창립 3년차의 신생 조직이고 시·군·구 단위 조직 기반도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직을 기존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조직과 동등한 위계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청년세대 참여 확대와 세대 단절 완화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년조직의 법률상 반영 여부와 그 방식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만 청년조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단위 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며, 동 연합회 역시 신생 조직으로서 지역 조직 기반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확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8